

-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운영지침 [별지 서식]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계약서

(제1쪽)

위 치	함양군 일원	규모	2,072.0ha
사 업 명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사업내용 (사업종류)	○ 조림사업 147.0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림조림 90.0ha - 큰나무공익조림 4.0ha - 산림재해방지조림 10.0ha - 가뭄피해복구조림 33.0ha - 내화수림대조림 10.0ha 	
	○ 숲가꾸기사업 1,965.0h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나무가꾸기사업 30.0ha - 산물수집(큰나무) 10.0ha - 어린나무가꾸기사업 85.0ha - 조림지풀베기사업 1080.0ha - 덩굴제거사업 340.0ha - 산불예방숲가꾸기 250.0ha - 미세먼지저감숲가꾸기 130.0ha 	
사업기간	2023년 1월 일부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 사업의 계약조건과 같이 성실히 서로 이행하기로 계약하고 2부를 작성하여 함양군수와 함양군 산림조합장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월 일

함 양 군 수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법인등록번호 :611-83-00763 대표자 진 병 영 인

함양군산림조합장

주 소 : 함양군 함양읍 용평2길 22

사업자등록번호 611-82-00484 대표자 박 성 서 인

근 거 법 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시행규칙 제5조 제3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함양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함양군산림조합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 범위) 본 계약의 사업범위는 별첨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으로 하되, 당초 계획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최종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함양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함양군수와 함양군산림조합장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수행) 함양군산림조합장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2조의 사업범위와 계획에서 제시한 사업규모,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함양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함양군수의 지시가 있었을 경우 또는 기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함양군산림조합장이 변경 조치 후 그 결과를 함양군수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5조(업무검사와 감독) ① 함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함양군산림조합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② 함양군수는 함양군산림조합장이 사업수행계획을 위반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였을 경우 사업 중지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함양군산림조합장은 지체 없이 함양군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6조(위험부담) ① 사업수행 중 함양군산림조합장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함양군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함양군산림조합장이 부담해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함양군산림조합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함양군수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함양군산림조합장은 지체 없이 함양군수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7조(경리구분) 함양군산림조합장은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대가의 지급) ① 함양군수는 함양군산림조합장에게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함양군산림조합장은 사업비 등 청구시 함양군수가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따른다.

③ 함양군산림조합장의 사업수행에 따른 세부사업비 및 수수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함양군수가 부담한다.(다만,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함양군수의 지시에 의해 본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사업비 정산 시 집행비용으로 인정한다)

제9조(사업완료 및 정산 등) ① 함양군산림조합장이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면 함양군수는 사업에 대한 완료 검사를 실시한 후 함양군산림조합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함양군산림조합장은 사업집행에 따른 사업비 등을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원가분석사의 확인을 받은 정산서(지출증빙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함양군수에게 제출하고 정산잔액은 함양군수에게 반납한다.

③ 사업비 정산은 공사원가방식에 따른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항목별 정산요령은 함양군수의 규정 및 절차에 따른다.

④ 함양군산림조합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자금의 예치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도 사업완료 후 함양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함양군수는 사업 정산이 완료된 이후 사업비 지출 또는 수수료 산정 등 회계상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 함양군산림조합장에게 반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10조(기록문서의 보존) 함양군산림조합장은 사업에 관계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기록(중요한 과업수행 과정을 촬영한 사진포함)하여 함양군수의 문서규정에 따라 보관해야 하며, 함양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계약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함양군수의 예산사정,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사정으로 함양군수, 함양군산림조합장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제13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함양군산림조합장은 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 또는 해지한 날 현재로 이미 함양군수가 함양군산림조합장에게 지급한 사업비의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를 함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잔액은 즉시 함양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5조(해석) 본 계약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함양군수와 함양군산림조합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